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3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3월 7일

3. 제안이유
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및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인 산업단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민간위탁사무 중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에 “대풍지방산업단지”를 “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”에 위탁하도록 함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대풍지방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풍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인가(충청북도공고 제2001-221호, 2001. 6. 15)함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추천요주

붙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